

부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3117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조수정, 김두한, 김소희

변 론 종 결 2022. 1. 20.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과 피고 사이에 2015. 11.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0. 21. C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C에게 위 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나. C은 2015. 11. 11. 무자력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C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응 30,000,1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가. 갑 제9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을 상대로 대여금 40,000,000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1심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04717)은 C이 D의 원고에 대한 12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실, 그러나, 항소심법원(부산지방법원 2020나58250)은 C이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거나 혹은 D의 원고에 대한 12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내용과 다르게, 원고가 2015. 10. 21. C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 115.4㎡

2. 건물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표

벽돌조 스라브층 2층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68.17㎡

2층 66.71㎡

